#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순애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2871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의의원 : 전순애 의원,
김이석 의원, 이상봉 의원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징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제4조까지의”로,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를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제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2.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질서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br>----------<br>----------<br>----------<br>----------<br>-. |
| 〈신 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br>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br>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br>---------- 제4 |

| | |
|---|---|
| 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 조까지의 ----------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 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 1.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
| 2.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 2.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질서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

| | |
|---|---|
| 〈신 설〉 | 3.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삭 제〉 |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삭 제〉 |
| **제6조** (생 략) |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법률)」(2026.3.5. 일부개정, 2026.7.1. 시행)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지방공무원법(법률)」(2026.6.2. 일부개정, 2026.6.2. 시행)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6.2. 일부개정, 2026.6.2. 시행)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형사소송법(법률)」(2025.12.30. 일부개정, 2026.7.1. 시행)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